

제392회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1월6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57)
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75)
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6)
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17)
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93)
7.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16)
8.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37)
9.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587)
10.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47)
1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99)
1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04)
14.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37)
1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66)
16.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861)
1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65)
1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32)
2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882)
22.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456)
2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681)
2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2171)
2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2224)
2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789)
2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5575)
2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99)
3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68)
3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61)
3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동의를 건(의안번호 2105129)

3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철회 동의를 건(의안번호 2106211)

상정된 안건

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7)	3
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5)	3
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6)	3
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7)	3
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6.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93) ...	3
7.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6) ...	3
8.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7) ...	3
9.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7) ...	3
10.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47)	3
1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99)	3
1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4)	3
14.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37)	3
1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6)	3
16.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61)	3
1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65)	3
1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2) ...	3
2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82)	3
22.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56)	3
2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81)	4
2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71)	4
2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24)	4
2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89)	4
2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5)	4
2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4
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9)	4
3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8)	4
3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1) ...	4
3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3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9) 철회 동의를 건 ...	11
3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11) 철회 동의를 건	11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앞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밤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송탄소방서 소속 소방관 세 분이 심정지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이 부상을 입으셨다는 비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고가 나면 우리 소방관분들께서 자꾸 생명의 위험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제발 저희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회대로 또 현장에서는 현장대로 그리고 또 소방청에서는 좀 더 장비의 첨단화를 통해서, 그런 과정에서는 소방관이 움직이기 전에 첨단장비가 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준비들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저희가 법과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다 찾아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부상당한 분들도 빨리 완쾌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 보겠습니다.

사고 수습과 피해 회복을 위해서 소방청, 행정안전부 그리고 관련 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행안위에서도 법과 예산 또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법안심사 1소위와 2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고 발의 의원 요청에 따라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철회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법안 심사에 앞서서 2022년 1월 1일 자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전보된 김일권 수석전문위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여러 모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도 새로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저희들에게 인사하기 전에 벌써 1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잘 지원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7)

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5)

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11816)

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7)

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93)

7.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6)

8.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7)

9.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7)

10.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47)

1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99)

1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4)

14.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37)

1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6)

16.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61)

1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65)

1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2)

2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82)

22.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56)

2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81)
2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71)
2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24)
2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89)
2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5)
2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9)
3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8)
31. 소방공무원 보건의안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1)
3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시08분)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3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재호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관 의원, 이형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각 1년 이상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 목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가산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산자산사업자 등 제삼자에게 가산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도록 하고, 압류한 가산자산을 가산자산사업자를 통해서 직접 매각할 수 있

도록 하며, 결손 처분을 시효완성정리와 정리보류로 구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형석 의원, 이은주 의원, 오영훈 의원, 서범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장협의회 가입 직급 기준 삭제,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가입 제한 삭제 등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관장과 협의 사항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되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울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혜련 의원, 오영훈 의원,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일을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정화하였으며, 주민투표 방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 방식을 도입하여 전자주민투표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 요건을 종전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에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의 득표로 완화하면서 주민투표 개표 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호·박완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연구원의 설립 요건이 되는 인구 기준을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방연구원으로 하여금 경영목표 및 예산 등 경영정보와 연구보고서 및 활용 결과 등 연구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이미 위촉된 사람을 위원회에서 중복하여 위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거나 매년 위원 임명·위촉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위원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박재호 위원님을 비롯한 1소위 위원님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완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완수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박완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완주 의원, 김성원 의원, 유동수 의원, 서일준 의원, 이명수 의원, 김태흠 의원, 윤영찬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대안은 현재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자율방범대의 조직 단위를 읍면동으로 하고 자율방범대 조직을 위한 신고의 수리와 자율방범대원의 위촉·해촉의 주체를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며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훈련의 주체를 시·도경찰청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등으로 하여금 기부금품 모집, 단체의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효율적인 자율방범 활동을 위해서 자율방범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 및 중앙회 등에 대해 국가와 자치단체가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배 의원, 김용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방본부 등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관계인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자동차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운용하도록 하고 운행기록장치의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박완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소위는 박재호 소위원장님과 김민철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이영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소위는 박완수 소위원장님과 김용관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오영환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한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기 전에 오늘 행안부장관님도 출석하셨고, 행안부장관님께서도 평택의 화재사고 관련해서 현장에 가시고자 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 일정을 통해서 현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하셨고 또 이래서 마음이 되게 불편하신 상황 속에서도 오셨습니다. 오신 걸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나고 또 소방관분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와 같은 희생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경각심을 갖는 게 필요하고요.

현재 구조 작업은 끝났지만 현재도 잔불 처리 등을 하고 있어서 상임위가 끝나는 대로 저는 일단 현장에 가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사실은 세 분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현장으로 가시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여야 간사님들과 함께 행안부장관께서 현장에 가시는 걸 양해했으나 그 사이에 안타깝게도 세 분의 소식이 들려와서 행안위를 하고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움에 또다시 이렇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흥교 소방청장님께서 청장님이 되시고 첫 저희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현장에 가 계시지요, 소방청장님께서?

○**소방청차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지휘하고 계셔서 오늘은 남화영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음을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화재 사고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찰청에서도 같이 잘 찾아주시고 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오늘은 법안 심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님 그리고 박완수 위원님 그리고 이형석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의 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토론은 3분만 할까요, 아니면 5분 할까요? 3분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3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토론을 신청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만들어진 지 24년 만에 사실상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직장협의회 가입이 허용된 경찰공무원의 근무 여건이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오늘 1소위 통과가 된 부분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는 사실 공무원과 사용자 쌍방 이익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현행법에서 직급 높낮이, 직무 등으로 직협 가입에 제한이 좀 많았지요.

설립 취지에 맞지 않았다고 보고 이번에 직급 기준은 삭제가 됐지만 직무 범위도 사실 좀 대폭 확대했어야 되는데,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다소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직협은 노조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도 가입 직무범위 확대에 대한 것 검토를 좀 꼭 해 주시고요.

경찰청장님, 경찰에서 기밀업무라고 하면 수사 업무를, 수사부서를 말하는 건가요?

○**경찰청장 김창룡** 전 수사부서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안보 수사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이은주 위원** 그런데 이 수사부서가 직협 가입을 못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도 경찰서 단위의 수사부서는 다 제한 없이 직협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도 가입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그로 인해

서 무슨 수사 기밀이 누출됐거나 이런 부작용, 악영향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닌데 굳이 제외할 이유가 있구나 싶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누구는 누구는 제외 이런 방식은 맞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장관님께 여쭙보고 싶은데요. 직협과 기관장 간에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데 대해서 왜 과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이게 조금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그동안 직협 활동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기관장과 애써서 합의를 해 놓고도 기관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의 사항을 단지 공개하는 것, 이행 현황 공개만으로 이 이행 약속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장관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담보하실 생각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기본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이행이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주 위원** 잘 안 됐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행이 되는 게 필요한데요. 다만 그 전에 협의나 또는 협상·합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면 많은 재량의 범위를 가지고 또 너무 제한을 해서 하지 않고 좀 넓은 범위에서 필요한 일들의 협의·합의가 필요한데 그 합의에 대해서 이행 의무를 너무 강제를 한다면, 엄격하게 강제한다면 그 협의·합의 과정이 굉장히 지난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강조점을 두냐라는 문제지만 그런 면에서 협의하고 합의하는 것들을 좀 더 원활히 할 때는, 사실은 합의하고 나서 안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행 의무까지 부과해서 협의나 합의 대상을 그렇게 좁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면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건 어디나 갈등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갈등이 벌어졌을 때 조정이나 중재하는 단위를 만들자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는데 왜 갑자기 입장을 선회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마지막으로 소방·경찰공무원 직협 가입을 열어준 지난 개정 이후에 또 한 번의 의미 있는 진전이 생긴 건 분명합니다. 또 직협 가입을 해도 사실상 활발한 활동하는 데 제약이 컸던 경찰공

무원들에게 희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경찰청장님, 직협이 활성화돼야 조직 내부가 건강하다는 것 꼭 염두에 두시고 개정안이 통과 되면 더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박완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 오늘 의결되는 주민투표법이 통과되게 되면 4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 50%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또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환산해 보면 전체 국민 중에 12%만 동의해도 주민들에게 주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주민투표가 가결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12%가 전체 자치단체 100% 주민을 대변하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안 사항 한두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장관님, 과거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게 있는데요 요즘 방역을 내세워서 너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떨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방역패스 조치, 이것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 걱정도 굉장히 크고 이게 청소년들에게 완전 집중을 강제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많이 있고요.

최근에 법원에서도 이게 집행정지 결정이 받아들여졌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조치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헌법상 기본권을 너무, 특히 청소년들에게 과다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아무튼 방역패스 포함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방역에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요. 당연히하지만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 그리고 나아가서 얼마 전에 저희들도 철회했습니다마는 의료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대비, 대응력을 갖

기 위해서 방역패스를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박완수 위원 장관님,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마저 말씀드리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범위를 확대합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 지금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교육책이라도 학원 등에 대해서 방역패스를 도입을 했고,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유예기간 등을 두고 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됐습니다마는 당연히 한 번 더 즉시항고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은 저희들이 늘 신중하게 또 조심히 해야 됩니다마는 방역이라는 큰 목표, 목적 등에 대해서는 조금은 또 예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완수 위원 장관님, 전반적인 방역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이들 학원과 독서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원, 독서실은 음식을 섭취하는 곳도 아니고 과거에 방역수칙이 강화되기 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다중 집회에 이걸 인정을 해 줬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식당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독서실이나 학원 같은 경우에 예방접종, 방역패스 없이는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걸 너무 과도하게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할 때 정부가 신축성 있게 대응해야 되고 이 수칙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경찰청장님, 제가 국정감사 때도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서 경찰의 요청 건수가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거의 43% 증가했어요. 과거에 줄어든 것이 이 정부 들어와서 2018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공수처가 야당 의원을 포함해 가지고 300명 이상을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 요청을 하고 야당 국회의원 거의 대다수가 지금 통신기록이 조회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법무부장관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인권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경찰에서도 지금 과도하게 통신기록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지금 경찰 쪽에서도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원칙이…… 만약에 정부 측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으로라도 이걸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위원님 말씀 중에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2016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다가 19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 수가 한 160만 건 정도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통신조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보면 한 80만 건…… 거의 90만 건 정도, 한 사건에 한 0.5건 이상 조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사에 필요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그런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완수 위원 수사에 관계없이 요청한 경우는 경찰에는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경찰청장 김창룡 저희들이 수사 초기에 사건 관계인과 통화했거나 아니면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자료 조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박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 토론해 주시고요. 김용환 위원님과 그다음에 오영환 위원님이 요청을 하셔서 두 분 더 3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도 요청하시는 겁니까? 서범수 위원님, 토론하시겠다는 겁니까?

○서범수 위원 예.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3분으로 해서…… 의결해서 통과시키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할까요?

○박재호 위원 통과시켜 놓고 현안질의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지금 일정에 그런 분이 계셔서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 없으면 의결하고 나서 위원님들 그 부분 말씀 좀 이어나가도록 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형석 위원님까지만 준비되셨으니까,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의결하고 그리고 그다음 더 토론하실 분들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아주 법안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셨고 장관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화재 현장에서 자꾸 소방관들의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과 관련해서, 지방세 감치제도 관련해서 경찰청장님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당초에 지난해 12월 7일 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당시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관련해서 경찰관들의 사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경찰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 늦춰서 이번에 다시 상정을 해서 법안 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당초에 이 지방세 감치법을 1000만 원을 대상으로 했다가 업무량이 많을 것 같다고 그래서 5000만으로 상향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굉장히 줄었어요, 한 800여 명으로 줄었고. 전체적으로 이 800여 명에 대한 법원의 감치율 그리고 또 경찰청이 감치하는 그런 프로테이지를 보면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볼 때는 거의 10명 정도, 11명 안팎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은 다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 업무에 대한 인력 보장 그리고 또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방세법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감치 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지금 기존의 법원이라든지 다른 분야의 감치를 해당 부처에서 해야 되는데 경찰이 대행하고 있는 게 한 3만 4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선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경찰 고유업무가 아니고 타 부처 업무를 우리가 대신 처리해 준다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증가된 업무에 비해서 현장 직원들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인력·예산 증원 등도 적극적으로 행안부와 협의하도록……

○이형석 위원 청장님께서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 법안을 제출했던 내용 자체가 국세 같은 경우도 2억 이상이면 감치를 하고 있고 과태료도 감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치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굉장히 압박을 받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도입하는 거니까 경찰청에서 이런 부분에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국가 정책적인 목적 때문에 도입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동의를 했지만 그런 현실적인 일선 직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조치는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몇 분 토론은 법안 의결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위원장님, 잠깐…… 법안 의결하기 전에 하나 수정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1소위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게 상임위에 한 번 늦게 올라와서 시행일이 2022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미 날짜가 지나버렸으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시면 지방세징수법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경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 중 비용 추계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건 중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에 대해 오늘 수정한 부분도 반영하여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 의사일정 제10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마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 의사일정 제16항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제1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입법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소심사 하겠습니다.

법안 제명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조문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조문 및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8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율방범대, 많은 분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가서, 주변에 가서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2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구정리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법안 의결을 마쳤습니다. 법안 의결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다음 해야 될 일정도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토론에 임하기로 하신 분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영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오영환 위원 오영환 위원입니다.

오늘 소방 현장으로의 출동 중 소방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포함한 소방기본법 개정을 의결했는데요. 관련해서 화재 현장의 위험성에 관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참 참담한 오후입니다. 이형석·박수동·조우찬 세 분의 송탄소방서 119구조대원 분들이 평택에서 발생한 냉동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진입하여 활동 중에 결국 세 분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냉동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하여 2020년 4월 이전 한익스프레스 화재 서른여덟 분이 그때 당시에 사망을 하셨는데요. 그때를 계기로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이런 냉동창고의 대형 인명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연성 내외부 단열재, 마감재들의 이런 폭발적인 연소 확대 가능성, 대피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위험성 때문이라고 선포를 하며 관련 위험한 건축자재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그런 건축법을 발의한 바 있고 작년 2월에 어렵게 통과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지어졌거나, 지어진 채 사용 중이거나, 법안 통과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서 새로이 지어지는 그런 냉동 물류창고들에는 적용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결국 오늘 신축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이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국회가 관련 업계의 과도한 예산 소요로 인한 반대, 현실적 한계라는 이름의 경제성의 논리를 앞세운 그런 법안 개정과 적용에 대한 무분별한 반대로 인해서 결국 또다시 막아내지 못한 인명피해에 대해서 우리 국회도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나, 저부터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번 고 이형석·박수동·조우찬,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다 순직한 세 분의 소방 영웅들의 희생을 계기로 우리 사회와 국회가 그리고 또 정부가 경제성의 논리보다, 그 어떤 반대

논리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2022년 이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잠깐만요, 우선 토론을 하시기 전에 의결을 한 가지 더 해야 합니다. 토론을 잠깐 미루고 진행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중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토론에 앞서 의결을 먼저 하고 또 다음 일정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과 제34항입니다. 이 두 건은 법률안 철회에 관한 것입니다. 대표발의한 분들이 법률안을 철회하겠다고 요청해 오셔서 법률안 철회 동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9) 철회 동의를 건

3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11) 철회 동의를 건

(14시45분)

○위원장 서영교 법률안 철회 동의를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제33항은 오영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발의자로부터 철회 요구가 접수됨에 따라 국회법 제90조제2항의 절차를 거쳐 우리 위원회 동의로 해당 법률안을 철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표발의 의원님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법률안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이원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철회 요구가 접수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통해 철회하고자 합니다.

법률안 철회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안건의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의결정족수는 괜찮게 되었습니다.

다음 토론해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님도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십니까?

김용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용판 위원** 이형석 의원께서 발의했던 지방세징수법 관련해서 아까 제 할 이야기 중요한 건 나왔지만 강조 사항, 몇 가지 보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경찰 현장에 있을 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감치 집행에 관련된 것 때문에 본연의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직원들의 불만이 아주 정말 폭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의 힘이 또 필요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설득은 하지만 그러나 세상 일은 주거나 받거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 본연의 일이 아니고, 본연의 일도 역수로 할 게 많은데 이걸 하게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당근도 줘야 된다, 즉 우리 경찰이 사실은 중요한 게 인력이 어디보다도 공무원 인력이 많지만 또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국민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경찰 인력에 대해서 장관님과 청장님께서, 경찰청장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장관님이 싫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장관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인력에 대해서, 특히 수사인력에 대해서 보장돼야 됩니다. 물론 경찰의 모든 기능이 다 골고루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책이지만 특히 이번에 여러 가지 수사권 조정 이후로 수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사실 엄청나게 큰데 비해서 경찰이 베푸는……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인력을 정예화시킬 뿐만 아니라 보강하는 데 특별히 장관님께서 좀 배려해 주시고, 지난번에 행안위 통과된 면책 규정도 법사위에서 지금 제대로, 일부 위원 반대로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감정이 들어갈 문제가 아니고 경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것은 경찰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바로 국민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관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경찰청장께서는 특단의 각오로 장관님에게 때도 쓰고 또 여기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기울이세요.

○**경찰청장 김창룡** 예, 알겠습니다.

○**김용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용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장관님, 지난 국감 때 이재명 전 경기지사 연가 사용내역에 대해서 복무 점검 한 번 해 보신다고 하셨지요? 안 그러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제가 특정되게 연가 사용 내용에 대해서 복무 점검한다고 그렇게 답변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서범수 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셨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일단……

○**서범수 위원** 그러면서 또 실무자들은 지금 퇴직한 분에 대해서 굳이 그런 걸 따져서 실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좀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직기간 동안에 실컷 사고 치고 난 뒤에 퇴직해 버리면 끝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심각한 위법이 있으면……

○**서범수 위원** 심각한지, 안 한지는 점검을 해 보셔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심각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정무직의 경우에는 징계의 한계도 있지 않습니다.

○**서범수 위원** 징계의 한계는 있어도 그래도 실태 점검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면 그래도 되려니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살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연가 사용에 대해서 심각한 위법을 아직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저도 부산경찰청에서 통신자료 제 공내역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냐? 왜 이래? 내 거 왜?’ 하니 부산청에서 이야기가 감찰계에서 수사 중인 사건 관계자들이 통화를 한 상대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래요.

요새 감찰에서 수사를 합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감찰수사계가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 근거가 됩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이번에 국수본, 아예 경찰 반부패 대책이라는……

○**서범수 위원** 제가 있을 동안은 감찰에서 수사를 못 했거든요, 그렇지요?

○**경찰청장 김창룡** 지금 감찰수사계가 따로 생겨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수사팀이 있는 모양이에요?

○**경찰청장 김창룡** 예.

○**서범수 위원** 그 근거가 뭐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서범수 위원** 수사라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근거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감찰계장 했거든요.

그리고 이 감찰수사팀이 만들어진 게 2020년 말인 걸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왜 감찰에서 수사를 못하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적어도 수사라 하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법률이나 어디 근거규정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청장 지시에 의해서 그냥 ‘감찰에 수사팀 만들어서 수사해’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반부패 대책의 일환으로……

○**서범수 위원** 대책의 일환인데 그것도 청장 지시지요. 청장님 지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찰청장 김창룡** 원칙적으로……

○**서범수 위원** 그러면 청장 지시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직제를 만들든지 법적 근거를 만들어놔야지요. 그런데 아무리 따져도 법적 근거가 없어요.

○**경찰청장 김창룡** 지금 경찰관에 대해서 불법 행위, 위법 행위 여부를 수사할 수 있는 곳에 그걸……

○**서범수 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과거에 감찰에서 수사를 안 했어요, 그렇지요? 그냥 수사팀을 만들었던 말이지. 그러면 수사라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릴까요?

○**서범수 위원** 예, 1분만 더 주세요.

○**경찰청장 김창룡** 참고로 저희들이 직제 개정을 해 가지고……

○**서범수 위원** 언제 했는데요?

○**경찰청장 김창룡** 그걸 2020년에 하고……

○**서범수 위원** 직제 개정을 했다고요?

○**경찰청장 김창룡** 예.

○**서범수 위원** 그 안에 수사라는 용어는 하나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없습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시지요.

○**경찰청장 김창룡** 예.

○**위원장 서영교** 끝나셨습니까,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님 하시고 김형동 위원님 하시고 임호선 위원님 하시고요.

○**이명수 위원** 먼저 소방청, 평택 화재사고 다 종료가 된 거지요? 종료가 됐습니까? 아직 지금 진행 중입니까?

○**소방청차장 남화영** 고립된 구조대원들은 지금 구조를 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마는 화재는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이명수 위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소방관 투입에 관한 기준과 뭘 좀 명확히 해야 되겠어요.

옛그제 귀뚜라미보일러 사고는 지금 피해액이 다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소방청차장 남화영** 화재 원인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때도 인력 투입에 관해서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인력 투입하는 것에 대한 기준과 지휘관의 여러 가지 판단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반복되는 소방관의 현장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리고 대형 공장이나 물류창고의 경우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위 스프링클러나 이런 걸 가지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바로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 뭐가 생기는데 지금 대형 공장이나 유통시설, 창고가 그동안 여러 차례 됐는데 별로 보완이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주택 화재의 초동 진압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특별한 화학제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외국의 경우에 일부 그런 걸 쓴다고 그러는데 빨리 보완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소방청차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청장님, 자율방범대 제가 정말 국회에 들어와서 18대부터 계속 낸 건데 이번에

했습니다. 이번에 됐는데 마침 자치경찰제하고 관련해서 할 일이 많은데, 자치경찰도 지난번에 재원 문제가 논란이 됐거든요. 앞으로 방법대 지원도 결국은 일반 행정에서 줄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행정과 경찰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경찰이 그동안 자율방법대 설치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어요, 반대 의견까지도 있었고. 이번에 흔쾌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잘 되도록, 이분들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 하는 데 꼭 좀 지원을 해 주시고요.

○경찰청장 김창룡 예.

○이명수 위원 공무원 직장협의회도 어렵게 타협이 됐는데 법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찰문화의 변화거든요. 그걸 능동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과 함께 행정안전위에서 상당히 오래된 법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안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법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경찰의 조직문화에 변화가 생기는 걸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오히려 진정한 직원들의 충성심과 근무에 대한 그걸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지금 지방재정 여러 가지 어려운 데 요즘에 내년도 사업 보면서……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수당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1분만.

○이명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의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이 아닌, 복지 사업이 아닌 것은 원칙적으로 총리실에서 그걸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거치지 않고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자치 영역만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용돈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과연 잘하는 건지, 제대로 자치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의…… 자치를 우리가 간섭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료, 선심성 이런 행위가 자치단체별로 벌어지는데 행안부 입장에서 당연히 좋은 의미의 조정이나 거기에 대

한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어야지 알아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의회 통과되면 그냥 다 주는 거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한번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걸 앞으로 합리적으로 잘, 자치도 살리고 지방재정의 바람직하지 않은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건지 방안을 한번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원칙은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특히 현금성 또 선심성의 지출이 다른 자치단체에 주는 영향도 있고 지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데도 상당 부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도 한 여섯 단계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강한 단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까지 침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행안부가 지급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해서 재정자립도 또 재정자립도에 불구하고 조금은 과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제어책이 있을지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같고요. 자꾸 말씀드린 대로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도, 특히 다른 자치단체의 형평성 문제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수정,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옆에 학교에서는 한 달에 2만원씩 용돈 주는데 우리 학교는 왜 안 줘니까?’ 아이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이것은 자치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런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임호선 위원 먼저 희생되신 소방관님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하여튼 연초부터 애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비보를 접하게 되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프네요.

경찰청장님, 계속 통신자료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계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통신자료 조회요청이랑 통신사실 확인자료 그리고 통신제한조치가 각각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통신자료는 어떤 내역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치고 이것은 법원 허가서가 필요한 게 아니고 협조 공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이잖아요.

○**경찰청장 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의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요청이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마치 무슨 불법 도·감청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여겨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이 홍보할 부분들은 홍보하고 방어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통신자료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통신비밀 보호라든지 개인정보 보호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부분이 있으면 방어하고 알릴 부분이 있으면 알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청장 김창룡** 예, 말씀대로 구분을 정확하게 알리면서 또 수사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다는 그런 점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전에 정말 뜻깊은 법이 2소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현장에서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너무 비교가 현격하게 되는 겁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심지어는 경찰에서 할 거냐 지자체에서 할 거냐 그간에 여러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사각지대에 놓인 거지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경찰대로 또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대로 관심에서 좀 비켜나 있다 보니까 대원을 확보하지 못할 정도의 조직이 있고 또 잘 되는 데는 여자 자율방범대가 따로 조직이 되는 데도 있고, 사실상 거의 많이 안 되어 있고, 또 하다 못해 대장 이·취임식에 가 보면 표창장 한 장이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경찰청이나 지방청에서는 관심이 거의 아예 없고요. 심지어 경찰서장이 오는 데는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법이 마련됐기 때문에 경찰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자율방범대를 어떻게 육성·발전시

킬 거냐에 대한 대안이 나와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에 공동체 치안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동안 지지난 국회 때부터 한 20여 건 이상 되는 법안이 발의는 되었지만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드디어 이렇게 의결된 데 대해서 저희들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치안 보조인력으로서 그리고 공동체 치안의 핵심 자원으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자율방범대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해서 차질 없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지원에 앞서서 관심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예, 그리고 지금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할 때도 보면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 내용대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래서 가장 먼저 간담회부터 경찰서장들이 가질 수 있게끔 바로 액션 플랜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리고 끝으로 감치 관련해 가지고요. 감치명령서가 연간 3만 4000건 접수된다고 하는데 집행되는 걸 보니까 대부분 소재 확인이 됐지요? 연간 한 1700건 정도가 사실 업무 부담으로 와 닿는 거지요?

○**경찰청장 김창룡** 한 2000여 건……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임호선 위원** 뒤에 기획조정관 계신데, 이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생안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수사부서에서 주로 집행……

○**임호선 위원** 경찰청에 이것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경찰청기획조정관 김학관** 수사심사정책담당관입니다.

○**임호선 위원** 이 관련 통계 자료를 각 지자체별로 우리 사무실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기획조정관 김학관**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토론해 주시고 박재호 위원님 토론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 안타깝게도 순직하신 세 분의 소방관님들, 유가족, 당사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용관 위원께서 잠깐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요. 청장도 나오셨고 장관님도 옆에 계시니까, 이번 경찰 수사권 분리도 있고 독립도 있는데 현장에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계급이라고 하면 총경 정도 됩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보통 과장급이니까 경찰서 단위는 경정이고……

○**김형동 위원** 지난번에 청장님이 시간 내주셔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시다라는 인구 기준이 어야 되는지 지역, 면적, 관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 특히 경북청 같은 경우에 과거에 비해서 인구가 줄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사 지휘라인의 고위 간부라고 그럴까요, 이쪽 인원들이 꼭 집어서 총경 이런 선인 것 같은데 그 수요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지역의 치안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적정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장관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였습니다.

통신자료 조회 관련해서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한번 여쭙볼게요.

통신자료 조회하면 그 해당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부여돼 있습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지금 현재로서는 법에도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형동 위원** 없지요?

○**경찰청장 김창룡** 예.

○**김형동 위원** 청장은 통신자료 조회당한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김형동 위원** 장관님은 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저는 받은 적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있지요? 장관님 굉장히 기분 나

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도가 불비했으면 빨리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지 현행법의 다소간의 해석이나 불비하기 때문에 적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문명 세계에 살면서 무리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장님, 이게 개인정보 보호에 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21대 여야 의원님들 자료 조회가 어떻게 됐는지 직접 확인해서 공개를 해 주세요.

○**경찰청장 김창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김형동 위원** 그것 하고 마치겠습니다. 절차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그다음 문제고요.

장관님,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선 이. 많은 국민들이 3월 9일 20대 대선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공정하시겠습니까라는 이른바 주무 부처, 법무부장관부터 해서 행안부장관까지 과거 예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라는 두 분이 다 자리하고 계시고, 특히 선관위의 누구입니까? 조해주 상임……

저도 1분만……

○**위원장 서영교** 예.

○**김형동 위원** 조해주 상임위원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요, 다음달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선거 사무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과감하게 선거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본인을 포함해서 ‘나는 사퇴하겠다’ 이렇게 한번 선언해 보시는 것 어떠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선거 중립성·공정성에 대해서는요 어떤 경우에도 흐트러짐이 없이 위반하거나 또는 그게 침해되는 일이 없으리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어제오늘 뉴스가 이런 게 나온 게 있지요? 선관위가 여기 나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똑같이 읽겠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형수 욕설’ 댓글로 비판한 네티즌, 선관위 수사 의뢰.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선관위가 기존에 폴 텍스트를 다 틀면 적법하다고 했는데 댓글 하나 달았다고 그래서 수사한다는 것이 큰 것이 작은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함하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부분을 선거사무를 지휘하는 분으로서 다시 한번 고민·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아무튼 선거의 중립·공정성은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지킨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위원장님, 이것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예, 말씀하세요.

○**경찰청장 김창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신자료는 사실상 수사 초기에 사건 관계인과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그런 것이고 실제 비교를 한다면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차적 조회라든지 주민 조회와 같은 성격이 강합니다. 현재 차적 조회, 주민 조회도 조회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공문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그 조회 사실을 당사자한테 통보하지 않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고 해서 당사자한테 통보를 만약 한다면 수사 초기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제삼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의 수사 사실을 알려 주는 문제가 발생하는 제반 사항 때문에 본인한테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입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예,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 청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 이야기하고 청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알아보니 이번 이런 것을 계기로…… 역대는 관행적으로 다 해 왔지요, 그런데 이런 걸 계기로 우리가 전기통신법 입법을 여야가 내놔야요. 그래서 혹시 조회를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줘라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청장님 이야기한 전 세계적으로 수사를 할 때 이게 기본적으로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 내용을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

할 정도로…… 수사 드라마 이런 것 많잖아요? 그때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를 즉 국민들한테 알려 주면 되는데 이런 게 오해가 돼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당하면 더 오해스럽지요. 그래서 그 법이 앞으로 추진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청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 기법을 알린다고 해서 그게 수사에 방해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찰청장 김창룡**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렇게 충분히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예.

○**박재호 위원** 두 번째는 행안부장관님, 제가 이번에 소위를 하면서 좀 느낀 것이 100만, 50만 이런 도시에 대한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은 다 좋은데 과연 지방은 어떻게 할까요? 행안부가 전체적으로 지방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인구소멸도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방에 어떤 어떠한 권한을 주고 대도시는 이런 것은 줄여서 지방에 도움이 되도록 해 준다는 어떠한 기본적인 맥락을 갖지 않고 있으면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표를 의식해서 또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에서는 지방은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행안부가, 관료들이 처음부터 철학을 좀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는 균형 발전을 저희들이 적극 시행을 해야 되고요. 이념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지방의 자치분권을 해야 됩니다.

○**박재호 위원** 당연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기본적으로 자유권을 신장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방식은, 작년에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마는 올해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 초광역권 협력 이런 것과 같이 특별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지방소멸기금이라든지 등등의 정책 수단을 충분히 활용해서 적어도 그 지방이나 또 지역이 소외되거나 어려운 것들을 계속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원리는 그렇게 하고 그와 같은 정책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만이 저희들이 그와 같이 악화되는 것 등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가 있고 그

리고 조금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호 위원 하여튼 장관님 계시는 동안에 큰 그림의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것을 수도권도 설득을 시키고 지방에도 그런 것을 알리고 하는 역할을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토론이 끝났고요.

장관님, 오늘 보도를 보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정적 여력이 되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기자회견에서.

우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가까운 친구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확진이 걸려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병원 치료도 못 하고 생활소 치료도 못 하고 집에서 가족이 다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지요.

이런 과정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른들은 마스크 하나 비용도 되게 아깝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어른들일수록 보푸라기 난 마스크까지 쓰고 다니시지요. 그러면 그 마스크 쓴 분을 보면서 다른 분들은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마스크에 드는 비용을 아끼는 어른이 계시면 그 마스크를 쓴 어른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랑 구분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서운 질병 관련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방어하고 보호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나라가 지원했던 지원금, 그런데 이 지원금이 보다 훨씬 적었던 대한민국……

이 지원금이 지급되면 그 비용이 지역에서 쓰이고 또다시 경기가 살아나고, 제가 생각하는데 소상공인들은 두텁게 지원금을 받는데 끊임없이 불만스러우십니다. 저쪽 집은 나보다 덜했는데 받고 또 나는 열심히 해도 카드였기 때문에 못 받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왜 필요한지를 좀 더 잘 전파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경제를 살리고 또 서로 경쟁하지 않고 분리하지 않고 이런 데 긴요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지금 시점이 또 백신패스라든지 여러 과정 속에서, 시간 제한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월 이후에 진행될 일인데 백신을 맞아야만 학원 또는 스터디카페, 가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의견들이 많이 있으니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접종을 다 끝냈는데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도 다 접종을 끝냈고. 그러나 백신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게 백신의 효능 그리고 백신의 불안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내용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재난 안전을 담당하는 총리 다음의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쓰고 계시는 걸 압니다. 국민들이 힘들어서 저에게 전하고 그걸 또 장관님께 전하면 장관님께서 어떻게든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에 저는 충분히 신뢰하고요. 그러면서 또 좀 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짧게 그냥 말씀드리면 오늘 그 신년 관련해서 기자간담회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재정 여건, 재정 여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접적 또 굉장히 간접이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봤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두텁게 보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전제였고요.

다만 굳이 저희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내지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2020년과 그리고 작년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00%를 지급했고 작년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83.2% 정도를 지급했는데 당연히 또 재정 여건을 검토해야 되지만 그 두 방식을 생각한다면 가능하다면 100%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특히 저희들이 그 업무를 현장에서 해 왔던 과정에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2020년의 전 국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방역패스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 잘 생각을 해서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김형동 위원님이 선관위 발표했던 내용은 그것이 녹취파일 관련해서 위법이 아니다가 아니라 위법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 누가,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에 따라서 위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모든 의결을 마쳤고요.

그래서 우선 전해철 장관님,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관해 주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징수 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행정안전부 소관 6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충실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창룡 경찰청장님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는데 이번 입법을 통해 그동안 치안 보조인력으로서 경찰력을 보완해 온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개정되어 전국 단위 연합협의회가 설립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더욱 소통하고 화합하는 경찰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남화영 차장님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소방청차장 남화영**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소방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 지난 7월경부터 지난 한 해 씬 없이 달려 왔습니다. 우리 박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완수 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저희가 통과시킨 법안이 643건입니다. 전체 상임위원회 중에 몇 등일까요? 1등이십니다. 아주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 주셨고요.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많은 법률안은 그냥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 씬 없이 검토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또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애써 주신 덕분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지금이 6일인데요, 4일부터 저희가 바로 법률안 심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약 30여 건, 34건의 법률안을 또 통과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님들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의 모든 분들께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고 또 죄송하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덕분에 국민들이 조금 더 나아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셨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세 분께서 감사의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지요? 주요한 법안, 귀한 법안, 어려운 법안, 만장일치하기 쉽지 않은 법안들을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논의하셔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김도읍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택 공사현장 사고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김도읍	김민철	김용판	김형동
박완수	박재호	백혜련	서범수
서영교	양기대	오영환	오영훈
이명수	이은주	이형석	임호선
한병도			

○청가 위원(3인)

이해식	한정애	이영
-----	-----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전문위원	장지원
전문위원	박규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경찰청장	
청장	김창룡
기획조정관	김학관
소방청차장	남화영